

전주지방법원 2024. 11. 27 선고 2023나14813 판결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재판경과

전주지방법원 2024. 11. 27 선고 2023나14813 판결

전주지방법원 2023. 5. 18 선고 2021가소25096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대륜

담당변호사 조원진

주위적 피고, 항소인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백제

담당변호사 한지영

예비적 피고, 항소심당사자C

변론 종결 2024. 9. 25.

판결 선고 2024. 11. 27.

제1심판결 전주지방법원 2023. 5. 18. 선고 2021가소25096 판결

주문

-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 원고의 주위적 피고 B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 및 예비적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가. 피고 C는 원고에게 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주위적으로,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10,583,910원 및 이에 대하여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 C는 원고에게 10,583,910원 및 이에 대하여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회사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가. 원고는 제1심에서, 1) 피고 C에 대하여 구상금 8,000,000원을 청구 하고, 2) 위 청구와는 별개로 주위적으로, 피고 회사에 대하여 부당이득을, 예비적으로 피고 C에 대하여 구상금을 각 10,583,910원 청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1) 피고 C에 대한 구상금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2) 주위적 피고인 피고 회사에 대한 부당이득청구를 인용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주위적 피고인 피고 회사만이 항소를 제기하였는바, 1)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구상금

청구는 양 당사자가 불복하지 않아 분리·확정되었고, 2)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주위적 청구와 피고 C에 대한 예비적 청구만이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된다(주관적 · 예비적 공동소송에서 주위적 공동소송인과 예비적 공동소송인 중 어느 한 사람이 상소를 제기하면 다른 공동소송인에 관한 청구 부분도 확정이 차단되고 상소심에 이심되어 심판대상이 된다(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6두17765 판결 등 참조)).

2. 기초사실

가. 원고는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이하, '원고 차량')의 소유자이고, 피고 회사는 D과 그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차량(이하, '피고 차량')에 관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이다.

나. 원고의 아들 E의 여자친구였던 피고 C는 2017. 10. 15.경 술을 마신 E의 요청에 따라 E을 대신하여 원고 차량을 운전하다가 고양시 일산구 자유로 부근에서 D이 운전하던 피고 차량의 후미를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다.

다. 피고 회사는 2017. 12. 8.경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고 차량의 수리비 6,938,310원을 수리업체에게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2017. 12. 8.경 피고 C, D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합의서

피해자 : D

가해자 : 피고 C

사용자 : 원고

제1조

이 사건 사고에 의하여 가해자 피고 C 및 그 사용자이며 자동차의 보유자인 원고는 피해자 D에게 손해배상으로 금 8,000,000원을 연대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하고, 원고는 D에게 2017. 12. 4. 위 금액을 지급하며, D은 이를 수령하였다.

제2조

D은 피고 C 및 원고에게 그 나머지의 청구를 면제하며 D은 이후에 피고 C 및 원고에게 아무런 청구도

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

마. 피고 회사는 2018. 9. 28.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고 차량의 수리비 3,645,600원을 수리업체에게 추가 지급하였다.

바. 원고는 2019. 3. 27. 피고 회사에게 이 사건 사고로 피고 회사가 수리업체에게 지급한 수리비 합계 10,583,910원(= 위 6,938,310원 + 위 3,645,6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D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3.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7. 12. 8. 피고 C, D과 사이에 '원고가 D에게 합의금 8,000,000원을 지급함으로써, D은 이후 아무런 청구도 하지 않기로 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합의를 하였으므로, 원고와 피고 C는 이 사건 합의 후 D에게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어떠한 채무도 부담하지 않고, 따라서 피고 회사도 D을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는 손해배상채권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회사가 2019. 3. 27. 원고로부터 10,583,910원을 지급받았으므로 위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만약,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주위적 청구가 인용되지 않을 경우, 원고는 피고 C가 부담해야 할 구상금 채무를 대신 변제한 것이므로, 예비적으로 피고 C는 원고에게 위 10,583,91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주위적 피고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가 2017. 12. 8.경 피고 F, D과 사이에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당사자의 내심적 의사에 관계없이 서면의 기재 내용에 의하여 당사자가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이 경우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그 기재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3다20915 판결 참조), 이 사건 합의서에 '그 나머지의 청구를 면제하며 D은 이후에 피고 C 및 원고에게 아무런 청구도 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는 취지가 분명하게 기재되어 있고, 위 합의의 효력 범위를 달리 해석할 아무런 기재가 없으며, 당심 증인 D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이를 뒤집기 어렵다고 할 것인바, D은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함으로써 나머지 손해배상청구권은 모두 포기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합의서로써 D의 원고 및 피고 F에 대한 나머지 손해배상채권은 소멸되었고, 피고 회사는 원고로부터 위 10,583,910원을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하였고 그로 인해 원고는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위 10,583,91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회사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 회사는,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위 10,583,910원은 민법 제742조의 비채변제 내지 민법 제744조의 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채변제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채무 없음을 알고 이를 변제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하고(민법 제742조), 채무 없는 자가 착오로 인하여 변제한 경우에 그 변제가 도의관념에 적합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민법 제744조). 을가 제2호증, 을나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2017. 12. 4. 피고 C에게 '예쁜딸 C야 모든 것 다 해결됐으니 너무 미안해하지 말고 아파하지 마'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는바, 원고는 이 사건 합의서의 작성으로 D에 대한 손해배상채무가 모두 소멸되었다고 인식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가 2019. 3. 19.경 피고 회사에게 '운전자(피고 C)가 며느리 될 뻔한 사람으로 불쌍해서 대위변제한다'는 취지로 말한 점, ③ 가사 원고가 2019. 3. 27.경 이 사건 합의서에 따른 채무가 없음을 모른 채 착오로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원고가 원고 차량의 소유자이고, 피고 C가 원고의 아들 E을 대신하여 원고 차량을 운전하게 된 경위 등을 고려할 때 도의관념에 적합한 변제로 볼 여지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채무 없음을 알고 이를 변제한 것으로 판단되고, 가사 원고가 채무 없음을 모른 채 착오로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지급이 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채변제에 해당한다고 보인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 회사의 직원으로부터 돈을 갚지 않으면 소송 내지 가압류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는 말을 듣고 부득이 변제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다.

5. 예비적 피고에 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합의서의 작성으로 D은 원고와 피고 C에 대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모든 손해배상채권을 포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합의서 작성 후 피고 C가 피고 회사에 구상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 C의 피고 회사에 대한 구상금 채무를 대신 변제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구상금 청구도 이유 없다.

6.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피고 회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고연금

판사송인우

판사설민수